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616호 2019.06.04.(화)

조 례

0	사천시	조례	제1575호	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1
0	사천시	조례	제1576호	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3
0	사천시	조례	제1577호	사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7
0	사천시	조례	제1578호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1	5
0	사천시	조례	제1579호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1	8
0	사천시	조례	제1580호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O
0	사천시	조례	제1581호	장애등급제 폐지시행에 따른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어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2	1
0	사천시	조례	제1582호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	4
0	사천시	조례	제1583호	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2	6
0	사천시	조례	제1584호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mathfrak{Q}
0	사천시	조례	제1585호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	32
0	사천시	조례	제1586호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3	4
0	사천시	조례	제1587호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3	5
0	사천시	조례	제1588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3	8
0	사천시	조례	제1589호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4	1
0	사천시	조례	제1590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4	8
0	사천시	조례	제1591호	사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5	1
0	사천시	조례	제1592호	에어로마트사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6	0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703호 사천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4
- 사천시 규칙 제704호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67
- 사천시 규칙 제705호 장애등급제 폐지시행에 따른 사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69
- 사천시 규칙 제706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71
- 사천시 규칙 제707호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5

회람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831-2215 / FAX 831-6012

제 616호

사천시 조례 제157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4일

사천시장 송도 근

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시민 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 2. "고령운전자" 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사천시에 주소를 둔 만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16호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사천시 조례 제157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4일

사천시장 송도근

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16호

- 제4조(장기요양기관 등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 2. 요양보호사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 3.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3년마다 요양보호사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 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 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 616호

- ②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 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 제8조(처우개선 사업)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7조의2에 따라 요양보호사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지원센터(이하 "센터"라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 616호

- 1.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 2. 요양보호사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 진에 관한 사항
-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4. 요양보호사 취업ㆍ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조례등과의 관계) ①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 정을 준용한다.
 - ② 요양보호사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사천시 조례 제157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4일

사천시장 송도근

사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 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인 아동
 - 3. 「긴급복지지원법」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 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7.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사천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제3조(지원방법)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 원
 -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 3. 도시락 배달
 - 4. 부식 지원
 -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 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점심·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616호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학교급식법」제1 1조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 록 적정한 급식 단가 책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급식 신청 절차) ①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이 장·통장·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 1. 아동급식 신청서
 -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조사 실시) 시장은 급식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6조(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과 조사를 실시한 후 사천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16호

- ② 시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역의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사천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 시행
 -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관계 공무원

- 2. 학부모 대표
- 3.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 4.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시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아동급식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 ⑨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 를 지급할 수 있다.
-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금품수수 등으로 연루되어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 제10조(위생·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이장 · 통장 · 반장
 - 2. 학부모, 교사, 영양사
 - 3.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 제11조(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은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 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급식지원 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사 천 시 궁 보

제616호

[별지 서식]

아동급식 신청서

		성명 아동관의 관계			생년월일				
	신청자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보호자	성명	관계	동거여부					
※ 신청자가	ㅗㅗ자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직업(구체적으로)	월수입(평균)		전화번호(휴대전화)				
	작성	주소							
		성명	성별 [] 남 [] 여	취학여	부] 취학 []미취학		
대	상아동 1	학교명 []초 []중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	록번호 (세)		
		성명	성별 [] 남 [] 0‡	취학여· [부] 취학 []미취학		
대	상아동 2	학교명	[]:	초 []중	[]	고등학교	학년	벋	
		주소			주민등	록번호 (세)		
	신청사유 (자세히 기재)								
신청 의견	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 중복 선택 가능[] 연중 조석식 : [[] 학기 중 토공휴일 등[] 방학 중 중식							
	희망 급식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 [] 일반음식점 [] 부식 배달	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도시락 바 [] 기타 (l달)			
위 아동을	을 급식지원 대상지	·로 신청(추천)합니다.							
사천시경	당 귀하			20 신청자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제616호

(뒤 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시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천시 조례 제157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 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4일

사천시장 송도근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를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제18조에 따라 사천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사천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 "사용자"라 함은"을 " "사용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 "사용료"라 함은"을 " "사용료"란"으로 한다.

제 616호

제4조제1호 중 "제3조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등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을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제9조의 규정"을 "제9조"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기타"를 "등"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매주 월요일
-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 제14조제1항 본문 중 "변형시켜설비"를 "변형시켜 설비"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 제15조제2항 중 "태만히하여"를 "태만히 하여"로, "훼손,망실 하였"을 "훼손, 망실하였"으로 한다.

제16조 중 "제13조"를 "제9조"로 한다.

제17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 제18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5"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로 하

제616호

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1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2조제3호 중 "제17조"를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한다. 제25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사천시 조례 제157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4일

사천시장 송도근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제1항"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5"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제19조의2"를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9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를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로 한다.

제616호

제6조제2항 중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등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을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태만이하거나"를 "태만히 하거나"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를 따른다.

부 칙

사천시 조례 제158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4일

사천시장 송도 근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1~3급 장애부모"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부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4호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조례 제158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장애등급제 폐지시행에 따른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4일

사천시장 송도근

장애등급제 폐지시행에 따른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을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제2조(「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별표 3의 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를 "「장애인복지법」제 32조"로 "장애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의"를 "장애인을 말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제3조(「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감면대상란 중 제3호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며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을 따른다"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로 한다.

제4조(「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5조(「사천시 바다낚시공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6호

제10조제1항제7호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6조(「사천시 수도 급수조례」의 개정)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제7조(「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의 개정)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조례 제158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4일

사천시장 송도 근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를 "대하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사업소·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를 "사업소·읍·면· 명·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도"를 "시의원, 청원경찰,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 공무직 근로자에 게도"로 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국내테마"를 "테마" 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퇴직예정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을 "퇴직예

제616호

정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출산양육 지원금 및 보육료 지원"을 "출산양육비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소속공무원의 생일 및 출산 축하금·축하 선물,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 녀 격려선물 제공
- 12. 소속공무원의 건강검진비·단체보험·건강프로그램 지원
 제13조제4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까지 에서"를 "제4항까지"로 한다.

부 칙

사천시 조례 제158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4일

사천시장 송도근

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라 사천시 장애인복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 3. 장애인가족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 다. 다만,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 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 2.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사천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수 있다.
 -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위촉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 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16호

-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 4. 위원이 제5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제616호

서기 각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가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시 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사천시 조례 제158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4일

사천시장 송도 근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평생교육법」 제36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 제34조"를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제21조의2, 제36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평생교육법」 제36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 제34조에서 규정하는"을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제21

제616호

조의2, 제3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 장애인등급표(제2조 관련)"를 "「장애인복지법」"으로, "중중장애인으로"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조례 제158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 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4일

사천시장 송도 근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3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8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을 "「장애인

제 616호

복지법」"으로,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13조 중 "의하며"를 "따르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조례 제158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4일

사천시장 송도근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호 및 별표 2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조례 제158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4일

사천시장 송도근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중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한다.

제616호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천 시 공 보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및 계약 우선 순위(제6조 관련)

유생	2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	70세 이상 노인으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예우	「북한이탈주민의
	에 따른 장애의 정	법」 제4조제1호의 로	「국민기초생활	예우 및 지원에	에 관한 법률」제.	보호 및 정착지원
	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 대상자 제로서 「보장법」에		의한관한 법률」제4조4조	L조 및 제5조의 대에	에 관한 법률 시행
	라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의 및	제5조	대상자 상자로서「국민기 령」제47조의6의	령」제47조의6의
-	「子민기초생활보	법」에 의한 생계	료급여수급자	로서 「국민기초	초생활보장법」에 대상자로서	대상자로서 「국민
	장법」에 의한 생	생급여수급자, 의료		생활보장법」에	상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보장법」
	계급여수급자, 의	의급여수급자		의한 생계급여수급	자, 의료급여수급	에 의한 생계급여
	료급여수급자			자, 의료급여수급자 자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 65세	65세 이상 70세 미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예우	「북한이탈주민의
	에 따른 장애의 정	법」 제4조 대상자 만	노인으로 「국	예우 및 지원에	에 관한 법률」 제.	보호 및 정착지원
	도가 심하지 않은	로서 비과세	대상민기초생활보장법	관한 법률」 제44조	L조 및 제5조의 대에	에 관한 법률 시행
r	장애인으로	자 및 「한부모가	」에 의한 생계급조 및	조 및 제5조 대상 상자로서		비과세 령 」제47조의6의
4	「子巴기圣생활보장법	족지원법」	제4조 여수급자, 의료급여 자로서	자로서 비과세 대대상자	100	대상자로서 비과세
	」에 의한 생계급여수 제7호에 따른		한부 수급자 및 비과세상자	상자		대상자
	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모가족복지단체	대상자			
	및 비과세 대상자			j		
※ 1. 이 표에서 B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기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남부	이 남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동일 순위가	-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단 장애인이 신청하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포함), 중복대상자.	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 순으	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72			

사천시 조례 제158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4일

사천시장 송도근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제 616호

-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② 장애인이 대체취득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3조 중 "법 제38조제4항제2호"를 "법 제38조제4항제1호"로, "2018년

제616호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특례)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3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사천시 조례 제158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4일

사천시장 송도근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시세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제 616호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 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 관을 모집·선정하여 사천소식지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 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 균 10회 이상일 것
 -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 3.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 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제616호

- ④ 시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 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 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 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 ② 1차 심사에서는 세무과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 ③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 · 결정한다.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시장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 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행정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세무과장, 회계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서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 결정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 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지나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은 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 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 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제616호

-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시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사천시 금고 지정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매각 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규칙 제52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 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따라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

정이 취소된 경우

-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시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체납, 「조세범 처벌법」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천소식지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16호

-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시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16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조례 제159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4일

사천시장 송도근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운영"을 "관리 및 운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시(운영주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제4조제2항 중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사용"을 "때 사용허가를 위한 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자체 심의회를 통해 심사를 거쳐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의"를 "사용허가의"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시가 주최 또는"을 "국가 또는 시(운영주

제616호

- 체)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제8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23조의2"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3조의2"로 한다.
- 제9조제1항제2호 중 "제7조 제4호"를 "제7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5일 전에"를 "10일 전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7일"을 "5일"로, "50퍼센트"를 "7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 제15조제2항 중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별표 2와 같이 한다."로 한다.
- 제17조제1호 중 "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회원제별 회원자격, 혜택 및 감면

O 개인회원

구 분	연회비	혜 택
일반	3만원	·기획공연 10% 할인 (1인 2매) ·티켓 우선 예매 서비스 실시 ·회원무료초청공연 (연1회) ·시즌별 패키지 공연 40%할인
골드	5만원	·기획공연 20% 할인 (1인 2매) ·티켓 우선 예매 서비스 실시 ·회원무료초청공연 (연1회) ·시즌별 패키지 공연 40%할인
VIP	10만원	·기획공연 30% 할인 (1인 4매) ·티켓 우선 예매 서비스 실시 ·회원무료초청공연 (연1회) ·시즌별 패키지 공연 40%할인
청소년	5천원	·기획공연 30% 할인 (1인 2매)

※ 개인회원의 경우 좌석의 30% 이내 티켓 우선 예매 서비스 실시(청소년 제외)

O 공통 혜택

- 문화소식지, 공연 팸플릿 홍보물 무료 우편발송
- 모바일 공연·전시 정보 알리미(푸시 서비스)
- 배지 증정 및 회원증 발급

사천시 조례 제159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4일

사천시장 송도근

사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 항제1호에 따라 사천시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 2. "빈집 정비" 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 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 616호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빈집 정비에 대한 정비계획의 목표와 방향
 - 2. 빈집 현황 및 실태
 - 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 4.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 5.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빈집 정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2조제1호에 따른 빈집(부분 철거는 제외)
 -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빈집
- 제6조(지원순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소유하는 빈 집을 지원 신청한 경우

제 616호

- 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등)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 3.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 4. 그 밖에 빈집 정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원기준) 시장은 지원순위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빈집 정비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라 빈집 정비에 관한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빈집 정비 지원신청서를 빈집이 위치한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빈집 정비에 관한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무허가, 미등기 등의 사유로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려운 건축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완료 보고) 빈집 정비 지원 대상자가 빈집의 철거 등 정비를 완료한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빈집의 안전조치)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소유자에게 다음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 · 보강
 -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제616호

-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및 차단
- 5. 기타 시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빈집
- ② 빈집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 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천 시 공 보

제 616호

세616모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20	년도 별	<u> </u> 1집	정비	지	원 신	<u>]청서</u>	읍면. 확 인		
성 명			생년월	일			성 별		남 🗌 여
주 소 (우편 수령지)						,			
연 락 처						가구유형	│ □ 차	반 상위 거노	□ 기초 □ 장애인 인
	구 2	조				면 적			m²
건축물	<u>9</u> 1	i.	주택 주택 외()	철거예정	20	•	
신국물 현 황	건축연.	三				신축계획		유	□ 무
	건 축 는 대 ⁷	물 장] 유		무	슬레이트 차라시엄 연계		유	□ 무
	위 >	₹]							
「사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20 년도 빈집 정비 지원신 청서를 제출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 현황 파악 목적이며,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외로 사용하지 아니함. ② 수집·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건물등기사항, 지방세과세현황 ③ 보유기간: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완료 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 , , , ,			[] 동 ⁹	의합니다. [] 동의	하지	않습니다.
2. 정비다	보 공동이 상 건축될 소유사실회	글 현황	사진 1투	1 .	,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기본증명서	
시청기 기그 이정 되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신청자 가구유형 파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 확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 2. 이용기관의 명칭 : 사천시
- 3.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등
-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와 함께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함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 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 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1 천 시 공 보

제616호

정비대상 건축물 현황 사진

성 명	위 치	

^ 1 천 시 공 보

제616호

[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

건축물	주 소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 물건의	표시			,	
위	치	건물면적 (m²)	용도	지붕재 글레이트, 기와 등)	동 수
용 도	20 년	빈집 정비/	사업 신청		
	축물을 20 주시기 바랍		일 현	재 본인이 소유하	고 있음을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	Z T	소 소	서 명
※ 마을주	민 2명 이상 :	확인을 득하여	여야 함.		I
		상기 사	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이 통	장		(서명 또는 인)	

^ 1 천 시 공 보

제616호

[별지 제3호서식]

20 년도 빈집 정비 완료보고서

대상자	성 명	생년월	일	な	d별	□ 남 □ 여
211 0 2 1	주 소			-		
미시기초미	위 치					
대상건축물	용 도		면	적		m²
정비현황	정비일자		폐기물	·발생량		톤
/장미연행 	보상금액		지출증	·빙서류		별첨
		현황사진				
		정비(철거)	전			
		정비(철거) -	ŏ <u>·</u>			

사천시 조례 제159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에어로마트사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4일

사천시장 송도근

에어로마트사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어로마트사천 행사의 연속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에어로마트사천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우주항공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에어로마트사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성별영향을 검토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당연직 위원 : 에어로마트사천 행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 2. 위촉직 위원 : 에어로마트사천 관련 기관 소속 직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업체 관계자 등 지역 발전과 우주항공산업에 대하여 관심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행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2. 행사 추진을 위한 부대사업의 시행
 - 3. 행사와 관련한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 4. 행사의 홍보
 - 5.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 3분의 1 이 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2. 행사 계획의 승인
 - 3. 그 밖에 행사와 관련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진다.
 -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에 대하여는 급여, 수당, 여비 등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교부) 시장은 에어로마트사천 행사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제 616호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규칙 제703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청소년문화의 집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4일

사천시장 송도근

사천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 제명 "사천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사천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 제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범위 안"

을 "범위"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을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제13조에 따른 사용료 전액감면"으로, "호의 경우에는 전액 감면한다"를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청소년 문화의집"을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천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10인"을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을 "청소년업무담당 국장,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으로, "청소년업무 담당주사"를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으로, "청소년업무 담당주사"를 "청소년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

제 616호

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제19조에 따라 위탁할 때"로,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3년으로 하며"를 "5년 이내로 하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을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중 "관하여 필요한"를 "관한"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규칙 제704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2019년 6월 4일

사천시장 송도근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 제3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청소년수련관 정기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 1. 매주 월요일

제 616호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제7조제1항 중 "수려관 시설"을 "청소년수려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1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제25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규칙 제705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장애등급제 폐지시행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등일괄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4일

사천시장 송도근

장애등급제 폐지시행에 따른 사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사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개정) 「사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제2조((「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사천시 수도 급수조

제616호

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2호 중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신청사유란 중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규칙 제706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2019년 6월 4일

사천시장 송도근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원의 종류는 일반, 골드, VIP, 청소년으로 하고, 연회비는 회원 가입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제5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616호

[별지 제2호서식]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

1. 신청인 주소 : (전화번호)

성명: (남/여)

직업(단체명):

2. 사용 시설명 :

3. 사용목적:

4. 사용기간:

5. 감 면 종 류 : (전액, 반액)

6. 감 면 사 유 : (구체적으로)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귀하

제616호

[별지 제3호서식]

문화가족 회원가입 신청서(제7조 관련)

성			회 원 번 호		
			기 년 건 포		
가입구분 □ ^{□ □} VII		생 년 월 일		성별	□남 □여
~	소				
	·번호				
지자/하기 주	소				
	·번호				
직장명/학교					
휴 대 전	화		우편물수	령처 자	백 □ 직장 □
전 자 우	편	@		7+) — N7	<u> </u>
관 심 분	'	·서트 □무용 □약	연극 □뮤지컬 □=	4악 □대중	음악
(중복체크가			□영화 □기타()	
성	명 구분	주소(자택	,직장,학교)/ 연	락처	비 고
	□일반	주 소:			
	□골드 □VIP				
추 가	□청소년	연락처:			
가 입	□일반	주 소:			
	□골드	T 3.			
	□VIP □청소년	연락처:			
	·입금계좌				
가입비 계좌 여	이체	•			
	' '예금주 :		—II >		
문	의 ·전화 :		·팩스 :		
「사천시 문화여	계술회관 관리 5	및 운영조례 시	행규칙」제7조	.에 따라 의	위와 같이
사천시 문화예			· · · · · -		· · ·
ं राज्या समान	르디딘 한되기를	7 勺 也/1 日已	亡 0 日 1 1 1 1 1 1		
	20	년 월	일		
		신청인	1 .	(서명 ㄸ	는 날인)
		'વે'ઇ દ	<u>.</u>	(1.9 7	-ㄴ ㄹㄴ/
사 천 시	장귀하				
,	O (1 -1				

* 개인회원 : 일반회원(30,000원), 골드회원(50,000원), VIP회원(100,000원), 청소년회원(5,000원)

제 616호

(별지 제4호 서식)

개인 회원증 <앞면>



<뒷면>

- 이 증은 사천시문화예술회관 회원임을 증명합니다.
- ◎ 기획공연 등 할인 혜택이 있는 공연 관람은 입장시
- ◎ 이 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 공연·전시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 증은 다른 용도로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사천 시문 화예술 회관

http://art.sacheon.go.kr

② 52553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471(동림동 전화 (055) 831-2460~3 전송 (055) 831-2470

회원증 규격 : 가로 8.6cm, 세로 5.2cm

사천시 규칙 제707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4일

사천시장 송도근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조례 제4조제2항의 예술품등 전문

제616호

매각기관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 제20조(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조례 제6조제4항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 제21조(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영 제74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 제22조(매각재산의 인수증) 조례 제9조제2항의 인수증은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616호

■ [별지 제11호서식]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1) 신청인	성명 (법인명) 주소 (영업소)			생년뒱 (법인등록				
	전화번호			전자우편	연주소			
제1항0	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빙 등을 경매를 통하0				연평균	회	
		망 이용촉진 및 세1호)을 이용한 「						

제출서류

- 1. 신청자격 입증서류
-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1항제1호 및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매 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제616호

■ [별지 제12호서식]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시업자명

				평가배점			
구분	평가지표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점
전 문	1. 인적 전문성 - 감정평가인, 현장경매 전문가 보유 현황 등	25~21	20~16	15~11	10~6	5~0	
성 (50)	2. 물적 전문성 - 작품 전시장, 보관장소, 경매장 등 구비 여부 및 규모	25~21	20~16	15~11	10~6	5~0	
매 각 업 무 <	3. 경매 횟수 등 실적 - 현장경매, 온라인 경매 구분 - 국가기관(또는 공공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지방공사 등 포함)으로 부터 위탁받아 매각대행한 횟수	25~21	20~16	15~11	10~6	5~0	
수 행 능 력 (50)	4. 기타 수행능력 - 자본금 등 규모 - 1회 경매가능 규모 등	25~21	20~16	15~11	10~6	5~0	
	합 🤃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제 616호

■ [별지 제13호서식]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5항(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UI-LTI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체납자	주소 (영업소)				,	
압류재산	의 표시					
압류	일		년	월	일	
		압류에 된	관계된 체납액			
ШП	그 비서 드	. LH -1 -1		지방자치단체	의 징수	·금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계	지방	네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끝.

발 신 명 외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제616호

■ [별지 제14호서식]

매각재산의 인수증

	성명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1)	주소	
매수인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2)	주소	
매도인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3) 매각재산:

(4) 대금 납부일: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제9조에 따라 위 매각재산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수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